

옐로우 택시 사업자 및 운전자에게 알립니다. TLC 규칙의 중요한 변경 사항

Meera Joshi

위원/의장

Allan J. Fromberg

공보부

frombera@tlc.nyc.gov

Rebecca Harshbarger

공보부

harshbargerR@tlc.nyc.gov

33 Beaver Street
22nd Floor
New York, NY 10004

TLC에서 다음과 같은 옐로우 택시 규칙의 변경 사항을 알리고자 합니다.

- TIF 운전자 지급액이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옐로우 택시로 완료된 운행건당 \$0.50에서 \$1.00로 상향 조정됩니다. 운전자가 TIF 지급액 수령 자격을 갖추려면 TIF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. 운전자 등록 방법은 [여기](#)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
- 이제 사업자가 택시로 개조할 수 있는 차량 유형의 선택권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. 전체 승인 차량 목록은 [여기](#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규칙은 휠체어 이용 가능한 차량(WAV)으로 개조하는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번 차량이 WAV일 경우, 계속 WAV를 구매 및 개조하셔야 합니다.
- 모든 옐로우 택시를 대상으로 표준 7년차 차량 퇴직 보상제를 실시합니다. 7년 이내에 입수한 차량의 경우, 7년 퇴직 보상제를 반영해 퇴직일이 조정됩니다.
- 이제 모든 옐로우 택시 사업자가 중고 차량을 개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 중고 차량들은 Woodside에 있는 TLC 검사소(Inspection Facility)에서 택시 개조 및 DMV 검사를 통과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. 중고 차량에 적용되는 퇴직일은 차량 연식에 따라 줄어들게 됩니다(예를 들어, 2016년 모델 차량은 2년차이며 해당 차량 개조 후 5년을 삭감해야 함).

이러한 규칙 변경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LC 외무국(External Affairs)에

tlcexternalaffairs@tlc.nyc.gov로 연락하십시오.